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와 경쟁력 분석

어명근* 장철수**

Key words: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 실행관세,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ABSTRACT

Tariff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sector can b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simple structure with higher applied rates than in Japan. Although, tariff items are well-classified in detail, neither tariff dispersion nor tariff escalation can be found. On the contrary, Japanese tariff structure is complicate with various tariff headings and categories for forestry commodities. Korea has relatively higher market comparative advantages for chest nut, fiber board, wood cases and pine mushroom while Japan has that in coniferous plywood and wood cases. Considering market comparative advantages and higher applied tariff rates for most forestry products, imports from Japan may surge more rapidly than export to Japan from Korea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 | | |
|----------------------|-------------------|
| 1. 서론 | 4.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 |
| 2.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와 특징 | 5. 요약 및 결론 |
| 3.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 분석 | |

1.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3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5

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경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FTA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경제 수준의 격차가 크고, 산업구조도 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강하여 이해득실의 정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농림업 분야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 연구위원.

** 연구위원.

반면 제조업 분야는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조차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한·일 FTA는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업 분야도 양국 간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FTA가 체결될 경우 대일 순수출액이 많은 임업 분야는 수출 증대로 인한 혜택이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이미 일본의 임산물 관세율이 낮은 수준에 있어 실제로 수출이 증가할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체결의 파급 효과 계측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인교(2003)는 CGE 모형과 GTAP 프로그램에 의해 양국 간 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일 및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세균 등(2001)은 한국과 일본의 2국가 CGE 모형에 의해 한·일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계측하였다. 추정 결과 한·일 FTA는 한국의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14% 향상시켜 농업 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임산물은 대일 수출이 4.2% 증가하고 수입은 45.4%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 임업 부문의 대일 무역수지 흑자 폭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세균 등(2004)은 FTA 체결에 따른 관

세철폐의 영향은 실행관세율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실행관세율 분석한 결과 한국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이 54%로 일본의 24%에 비해 높게 나타나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잠재교역액으로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잠재수출액은 2002년 기준 6억 5천만 달러, 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잠재수출액 규모는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한·일 FTA 체결 시 경제 전반 또는 농업과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임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 전략에 관해서는 경제 전체의 한 부문으로서 피상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만 제시되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임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취급하여 분석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하여 양국 간 임산물 교역 실태를 검토하고 양국의 관세 구조와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임산물 교역 변화 전망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와 특징

2.1.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후와 재배품목도 유사한 편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 임산물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2003년 53.9%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22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임산물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초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수출입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흑자 폭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1999년 1억 9,300만 달러에서 2003년 1억 100만 달러로 47.7%가 감소하였고, 수입도 같은 기간에 2,40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로 40.6%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흑자는 1999년 1억 6,900만 달러에서 2003년 9,200만 달러로 45.6% 감소하였다.

대일 임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밤, 송이

버섯,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밤 수출액은 1999년 8,100만 달러에서 2003년 4,400만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탓도 있지만, 노동력 부족, 높은 인건비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깐밤을 국내에서 가공하지 못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생밤을 수출하여 깐밤으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발생하게 된 것도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송이버섯 대일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약 4,5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밤 수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최근 국내 수요 증가로 고급품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내 가격도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밤	80,721	83,899	71,123	51,258	43,762
송이	44,605	30,993	27,528	22,564	17,739
섬유관	11,447	9,423	9,213	9,488	9,470
계재목	3,498	7,152	5,052	3,046	4,040
표고	4,246	2,279	1,293	2,261	4,014
합판	2,591	3,369	5,024	3,706	2,415
목재케이스	1,573	4,415	4,020	2,099	2,115
문틀, 건축목공품	1,970	1,859	1,169	1,162	824
파티클보드	699	1,711	1,047	1,110	1,724
목탄	190	147	291	413	308
수피류	-	655	584	421	334
대일 수출액 계	192,742	183,156	152,744	114,156	101,127
임산물 총수출액	297,714	281,628	230,612	180,107	187,578
대일 수출비중	64.7%	65.0%	66.2%	63.4%	53.9%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2004.

표 2.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판	12,596	9,898	5,436	4,725	3,226
단 판	1,910	2,633	1,351	1,487	1,522
목재케이스	1,461	2,336	1,958	65	685
원 목	562	470	243	517	181
로 진	286	146	105	74	141
밤	1	4	127	276	120
건축목공품	956	842	37	298	54
죽제품	21	13	7	12	6
수피류	32	26	-	39	-
대일 수입액 계	23,881	19,873	15,813	12,505	9,519
임산물 총수입액	1,521,347	1,744,144	1,799,232	2,157,301	2,173,080
대일 수입비중	1.6%	1.1	0.9	0.6	0.4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2004.

표고버섯 수출액은 1999년 400만 달러에서 2001년 130만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03년 다시 4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고버섯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스(SAS) 발생과 함께 중국산 표고버섯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문제 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산 표고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섬유판 수출액은 1999년 1,100만 달러에서 2003년 95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제재목은 1999년 300만 달러에서 2000년 700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03년 4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여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합판 수출액도 1999년 약 300만 달러에서 2001년 500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03년 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목재케이스와 상자, 문틀과 건축목공품,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대일 임산물 수입은 임산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일 임

산물 수입은 1999년 약 2,400만 달러에서 2003년 950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전체 임산물 수입에서의 비중도 1.6%에서 0.4%로 급락하였다. 임산물 수입은 수출과는 달리 목재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판 수입액은 1999년 1,300만 달러에서 2003년 300만 달러로 70% 이상 크게 줄었으며 단판 수입은 같은 기간에 약 2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25% 감소하였다.

목재케이스 수입액은 1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줄었고 로진도 30만 달러에서 절반 이하인 14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원목 등이 소량 수입되고 있으며 건축목공품 수입은 1999년 100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10만 달러 이내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2.2. 한·일 임산물 교역의 특징

우리나라의 대일 임산물 교역은 장기적인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밤, 송이, 표고버섯 등 일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이들 품목의 작황과 수출액이 임산물 전체 수출액과 무역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밤 수출 비중은 2003년 46.6%, 송이버섯의 비중은 18.0%, 표고버섯은 4.3%로 이들 세 품목이 대일 임산물 수출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임산물 교역의 두 번째 특징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밤과 송이버섯처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품목은 있지만 그 밖의 다른 품목들은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력이 약하고 특정 용도나 기호에 필요한 규격 또는 조건을 갖춘 품목만 수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시장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출 증대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의 변화나 대체품목이 출현할 경우 대일 수출이 감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특징은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가공도와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하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 토질과 지형, 기후와 주변 환경적 요인 등 한국 고유의 토착적 천연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임산물이 원형 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특징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 변동 폭이 연도별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요가 비교적 안정된 일

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은 물론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생산량이 급변하여 수출량도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일 임산물 수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이 하락해도 수출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임산물에 대한 일본의 실행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수출 증가보다 오히려 수입 증가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FTA 체결 이전 양국의 품목별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관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국별 품목분류 체계가 서로 달라 동일한 세 번이 같은 품목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발생한다.

3.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 분석

일반적으로 양국 간 교역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품목 분류 체계와 품목류(Chapter)별 관세 격차, 그리고 관세율의 누진적 형태 등 관세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품목의 세분화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관세 구조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대부분 국가의 관세 체계는 보호 수준이 높은 산업 또는 품목일수록 품목을 세분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 격차는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간 차이를 의미하며 관세격차가 클수록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누진성은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서 누진적 구조가 강할수록 가공품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품목 분류 체계와 관세 구조를 단기소득 임산물(일본은 특용 임산물)과 목재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1.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범위는 HS 1류와 5~8류, 11~14류, 그리고 20~23류에 속하는 농산물로 HS 4 단위 기

표 3.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분류 체계 비교

HS 번호	품명	HS 6 단위 품목 수		HS 10 단위 품목 수		HS 10 단위 품목 차이	비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2	2	0	
0505	새의 깃털	2	2	2	2	0	
0602	나무(분재, 기타)	4	4	21	4	17	
0604	이끼 및 은행잎	2	2	3	2	1	
0709	버섯류(신선)	3	3	5	3	2	
0710	버섯류(냉동)	1	1	3	1	2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3	4	3	1	
0712	버섯류(건조)	3	3	6	3	3	
0714	췌뿌리	1	2	2	2	0	
0802	견과류	8	9	14	14	0	
0810	감, 대추(신선)	1	1	2	1	1	
0811	견과류(냉동)	1	1	3	2	1	
0813	견과류(건조)	1	1	2	1	1	
1106	사과뿌리	1	1	2	3	-1	
1209	종자류	1	1	3	1	2	
1211	초피	1	1	1	1	0	
1301	올레오레진	1	1	2	2	0	
1302	생칠	1	1	1	2	-1	
1401	식물성재료	3	3	7	5	2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1	1	1	1	0	
1404	수피	2	3	11	9	2	
2003	버섯류(조제저장)	2	2	3	5	-2	
2005	죽순(조제저장)	1	1	1	2	-1	
2006	죽순(설탕조제)	1	1	2	2	0	
2008	밤(조제저장)	1	1	1	4	-3	
2106	도토리분	1	1	1	1	0	
2208	오가피주	1	1	1	1	0	
2308	도토리 열매	1	1	2	1	1	
합계	28	50	54	108	80	28	

* 일본은 HS 9 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음.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준 28개 품목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을 HS 6 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50개, HS 10 단위 기준으로 세분하면 모두 108개가 된다.

일본의 HS 품목 분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HS 9 단위까지만 세분되어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해당하는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 범위는 HS 4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28개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을 HS 6 단위로 세분하면 54개, HS 9 단위로는 모두 80개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세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HS 4 단위 기준으로 동일한 품목이 10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를 계측한 결과 나무(분재, 기타) 21개, 견과류 14개, 수피 11개 등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았다. 식물성 재료(7개)와 건조 버섯(6개) 등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초피와 생칠 등 7개 품목은 HS 10 단위 품목 수가 한 개뿐으로 전혀 세분화되지 않았다. 맹금 및 앵무류 등을 포함한 9개 품목도 HS 10 단위 품목 수가 두 개에 불과하여 세분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HS 4 단위 부호가 같은 품목이 HS 9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견과류(14)와 수피류(9)가 많았다. 식물성 재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세분화되었으나 조제저장 버섯류는 우리나라보다 세분된 반면 건조버섯은 우리나라보다 세분화 정도가 낮았다. 그 밖에 분재용 나무와 조제저장 밤이 각각 4개씩 세분되어 있다. 반면 HS 9 단위까지 전혀 세분되지 않은 품목은 냉동 버섯류와 신선 감과 대추, 건조 견과류 등 모두 9개였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 분류는 한국에 비해 HS 6 단위까지는 약간 더 세분되어 있지만 HS 9 단위에서는 한국에 비해 세분화 정도가 낮다. 특히 분재용 나무(HS-0602)가 한국은 21개로 세분된 반면 일본은 4개에 불과하였으며 건조 버섯류(HS-0712)는 한국이 6개인데 비해 일본은 3개, 신선버섯류(HS-0709)는 한국 5개, 일본 3개씩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피(HS-1404)와 식물성 재료(HS-1401)도 한국의 세분화 정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일본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더 높은 품목은 사고뿌리(HS-1106)와 조제저장 버섯류(HS-2003), 조제저장 죽순(HS-2005), 조제저장 밤(HS-2008)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분류는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세분화 정도가 낮지만 가공도가 높은 조제저장 처리 품목은 일본의 세분화 정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2.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구조 비교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실행세율 관세범위는 0~50%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는 50%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HS 4 단위 기준 28개 품목류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HS-0106)를 비롯하여 21개나 되었다. 특히 HS 10 단위 품목 부호가 다른데도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HS 4 단위 기준으로 14개나 되었다. 분재용 나무 품목에는 HS 10 단위 기준 21개에 일률적으로 실행세율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식물성 재료도 HS 10 단위 기준 7개에 대해 단일세율 8%가 부과되고 있다. 품목분류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나 세율이 차등 부과되지 않아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기소득 임산물 28개 품목(HS 4 단위 기준)의 단순평균 실행세율은 18.7%로 나타났다. 평균 실행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선 감과 대추 및 건조 견과

류와 조제저장 밤으로 모두 50%였다. 신선 버섯과 칩뿌리, 냉동 견과류도 30% 이상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버섯류와 견과류, 죽순 및 오가피주도 2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무관세 품목은 종자류만으로 무관세 비율이 HS 10 단위 기준 2.8%에 불과하였으며 새의 깃털, 올레오레진, 충전용 식물성재료, 수피류 등에도 4% 이하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

표 4.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106	맹금 및 앵무류	8.0	0	8.0	0	0	2
0505	새의 깃털	3.0~5.0	0	4.0	0	0	2
0602	나무(분재, 기타)	8.0	0	8.0	0	0	4
0604	이끼 및 은행잎	8.0	3.0	8.0	3.0	0	0
0709	버섯류(신선)	30.0~50.0	3.0~4.3	32.8	3.4	0	0
0710	버섯류(냉동)	30.0	6.0	28.0	6.0	0	0
0711	버섯류(일시저장)	30.0	9.0~12.0	27.8	10.0	0	0
0712	버섯류(건조)	30.0~50.0	9.0	29.5	9.0	0	0
0714	칩뿌리	20.0~50.0	9.0~12.0	31.5	10.5	0	0
0802	견과류	8.0~50.0	0~12.0	27.2	4.8	0	3
0810	감, 대추(신선)	50.0	6	50.0	6	0	0
0811	견과류(냉동)	30.0	12.0	30.0	12.0	0	0
0813	견과류(건조)	50.0	9.0	50.0	9.0	0	0
1106	사과뿌리	8.0	0~21.3	8.0	12.1	0	1
1209	종자류	0	0	0	0	3	1
1211	초피	8.0	2.5	8.0	2.5	0	0
1301	올레오레진	3.0	0	3.0	0	0	2
1302	생칠	8.0	0~6.0	8.0	3.0	0	1
1401	식물성재료	8.0	0~8.5	8.0	4.6	0	1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3.0	6.6	3.0	6.6	0	0
1404	수피	3.0~5.0	0~6.0	3.5	3.0	0	4
2003	버섯류(조제저장)	20.0	9.6~13.4	20.0	10.7	0	0
2005	죽순(조제저장)	20.0	13.4~13.6	20.0	13.5	0	0
2006	죽순(설탕조제)	20.0~30.0	12.6~18.0	25.0	15.3	0	0
2008	밤(조제저장)	50.0	10.0~21.0	50.0	14.7	0	0
2106	도토리분	8.0	15.0	8.0	15.0	0	0
2208	오가피주	20.0	0	20.0	0	0	1
2308	도토리 열매	5.0	0	5.0	0	0	1
	평균			18.7	6.2	3 (2.8%)	23 (28.8%)

주: () 안은 무관세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고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6.2%로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품목별 실행관세율 범위는 0에서 21.3%까지로 관세격차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평균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설탕조제 죽순으로 15.3%였으며 도토리 분도 15.0%로 높았다. 조제저장 밤은 14.7%, 조제저장 죽순은 13.5%, 사고뿌리와 냉동 견과류 등에도 12.0% 이상의 비교적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이다.

반면 무관세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를 포함하여 HS 9 단위 기준 23개로 무관세 비율은 우리나라의 열배가 넘는 28.8%였다. 그 밖에 평균세율이 낮은 품목은 초피 2.5%, 이끼 및 은행잎과 생칠, 그리고 수피가 각각 3.0%, 신선 버섯 3.4% 등이었다. 신선 견과류도 4.8%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국내 생산 품목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공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버섯류(신선 3.4%, 일시저장 10.0%, 조제저장 10.7%)와 밤(건조 견과류 9.0%, 조제저장 밤 14.7%) 및 도토리(열매 0%, 가루 15.0%)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특용 임산물은 HS 4 단위 부호가 같아도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HS 9 단위 부호가 다를 경우 대부분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HS 9 단위 세 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와 새의 깃털 분재용 나무 등 HS 4 단위 기준 7개 품목에 불과하여 한국의 단일세율 적용 품목 14개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면 HS 9 단위 부호가 다를 경우 상이한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신선 및 일시저장 버섯류를 비롯하여 모두 12개로 한국의 7개보다 훨씬 많았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의 관세구조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한·일 목재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 분류는 HS 4 단위 기준으로 44류 21개와 38류 2개, 45류 4개, 46류와 48류, 그리고 94류 각 1개씩으로 전체 30개로 구성된다. HS 6 단위로는 44류 68개, 38류 2개, 45류 7개, 46류, 48류, 94류 각 1개씩 모두 80개이며 HS 10 단위 기준으로는 모두 228개에 달한다.

목재류 품목별 세분화 정도는 원목(HS-4403)이 42개로 가장 높았고, 단판(HS-4408) 36개, 제재목(HS-4407) 35개, 합판(HS-4412) 2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섬유판(HS-4411)과 목재장식품(HS-4420), 옷걸이 등(HS-4421)과 파티클보드(HS-4410)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로진(HS-3806), 목초액(HS-3807), 목모와 목분(HS-4405) 등 최종소비재를 포함한 9개 품목은 전혀 세분화되지 않았다. 목탄(HS-4402)을 포함한 4개 품목도 HS 10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가 각 2개에 불과하여 세분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분류 체계는 원목이나 제재목과 같이 원자재용 또는 가

공도가 낮은 품목은 세분화된 반면 성형목재나 목재의 붕과 같이 가공도가 높은 품목은 세분화 정도가 낮은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목재류도 HS 4 단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38류 2개, 44류 21개, 45류 4개, 46류, 48류, 94류 각 1개씩 모두 30개로 구성된다. HS 6 단위 기준으로는 38

표 5. 한·일 목재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HS 번호	품명	HS 6단위 품목 수		HS 10단위 품목 수		10단위 품목 차이	비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3806	로진	1	1	1	1	0	
3807	목초액	1	1	1	1	0	
4401	펄나무, 칩, 톱밥	4	4	4	4	0	
4402	목탄	1	1	2	2	0	
4403	원목	7	7	42	31	9	
4404	목재의 붕	2	2	4	6	-2	
4405	목모와 목분	1	1	1	1	0	
4406	케도용 칩목	2	2	2	2	0	
4407	제재목	8	8	35	39	-4	
4408	단판	4	4	36	27	9	
4409	성형목재	2	2	2	11	-9	
4410	파티클보드	3	7	7	14	-7	
4411	섬유판, 마루판	8	8	12	8	4	
4412	합판	9	9	27	38	-11	
4413	고밀도화 목재	1	1	1	1	0	
4414	그림틀, 사진틀	1	1	1	1	0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2	2	2	2	0	
4416	목재통	1	1	1	1	0	
4417	목재공구	1	1	1	2	-1	
4418	창문틀, 문틀	6	6	7	10	-3	
4419	목재식기	1	1	4	2	2	
4420	목재장식품	2	2	10	3	7	
4421	옷걸이, 이쑤시개	2	2	8	6	2	
4501	코르크(가공)	2	2	2	2	0	
4502	코르크(반제품)	1	1	1	1	0	
4503	코르크(제품)	2	2	2	2	0	
4504	응집코르크 제품	2	2	2	2	0	
4602	대나무제품	1	1	6	4	2	
4814	벽지	1	1	3	1	2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1	1	1	1	0	
합계	30개	80	84	228	226	2	

* 일본은 HS 9 단위까지만 세분된 품목의 세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류 2개, 44류 72개, 45류 7개, 46류와 48류, 그리고 94류 각 1개씩 모두 84개로 세분된다. HS 9 단위 기준으로는 38류 2개, 44류 211개, 45류 7개, 46류 4개, 48류와 94류 각 1개씩 모두 226개의 품목으로 세분되어 우리나라와 세분화된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세분화된 정도가 높은 품목은 제재목(HS-4407)과 합판(HS-4412)이 각각 39개와 38개였으며 원목(HS-4403)은 31개, 단판(HS-4408)은 27개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합판과 제재목 등 가공도가 높은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원목과 단판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낮았다. 그 밖에 성형목재(HS-4409)와 파티클 보드(HS-4410), 창문틀(HS-4418) 등이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섬유판과 마루판(HS-4411), 목재장식품(HS-4420), 목재식기(HS-4419), 대나무제품(HS-4602), 옷걸이와 이쑤시개(HS-4421)의 세분화 정도가 낮았다.

한편 목모와 목분(HS-4405), 고밀도화목재(HS-4413), 그림틀과 사진틀(HS-4414), 목재통(HS-4416)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궤도용 침목(HS-4406)과 목재케이스 및 팔레트(HS-4415), 코르크(HS-4501) 등도 세분화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세분되지 않은 목재공구가 일본에서는 2개로 세분화된 반면 벽지(HS-4814)는 일본이 전혀 세분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3개로 세분되어 있다.

3.4. 한·일 목재류 관세 구조 비교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별 실행세율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13.0%까지로 관세 격차(Tariff Dispersion)가 13.0% 포인트로 나타났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 범위가 0%에서 10%로 관세격차가 10.0% 포인트인데 비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재류의 평균관세율은 6.23%로 일본의 평균세율 2.33%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무관세 품목이 원목류 42개 외에 칩상 활엽수와 벽지류, 조립식 목재건축물 등 47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원목 30개와 제재목 26개 외에 땔나무 4개, 단판 3개, 창문틀 3개 등 89개나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재류 실행관세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HS 4 단위 기준 30개 품목 가운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칩(HS-4401)과 합판(HS-4412)을 제외한 28개로 전체의 9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목은 42개 품목 전부에 대하여 할당세율 0%가 부과되고 있으며 단판 36개 품목과 제재목 35개, 섬유판 12개 등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합판에는 27개 품목 가운데 6mm 이상의 열대산 합판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조정관세 13%(2003년 기준)를 부과하고 나머지 8개 품목에는 비농산물 단일세율 8%를 적용함으로써 차등 세율을 부과할 여지가 제한된 상태이다.

반면 일본의 목재류 관세 체계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HS 4 단위 품목에 단일세율이 부과된 품목은 15

개로서 단일세율 적용비율이 50%로 우리나라의 93.3%보다 크게 낮아 많은 품목에 상이한 세율이 있다. 특히 HS 9 단위 품목 수가 많은 제재목(HS-4407), 합판(HS-4412), 원목(HS-4403), 단판(HS-4408)은 물론 파티클 보드(HS-4410)와 성형목재(HS-4409), 창문틀(HS-4418) 등은 모두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품목을 세분한 이유가 품목별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합판과 목재장식품, 옷걸이와 이쭈시개 등에는 최고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품목을 여러 개의 HS 9 단위 품목으로 세분하여 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최고세율

표 6. 한·일 목재류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3806	로진	6.5	0	6.5	0	0	1
3807	목초액	6.5	0	6.5	0	0	1
4401	떨나무, 칩, 톱밥	0~2.0	0	1.5	0	1	4
4402	목탄	2.0	0	2.0	0	0	2
4403	원목	0(할)	0~3.5	0(할)	0.1	42(할)	30
4404	목재의 봉	5.0	0~7.5	5.0	4.8	0	2
4405	목모와 목분	5.0	2.5	5.0	2.5	0	0
4406	케도용 침목	5.0	0	5.0	0	0	2
4407	제재목	5.0	0~6.0	5.0	1.6	0	26
4408	단판	3.0	0~6.0	3.0	5.0	0	3
4409	성형목재	8.0	0~7.5	8.0	2.9	0	4
4410	파티클보드	8.0	5~7.9	8.0	5.8	0	0
4411	섬유판, 마루판	8.0	2.6	8.0	2.6	0	0
4412	합판	8.0~13.0(조)	6.0~10.0	11.5	6.6	0	0
4413	고밀도화 목재	8.0	7.0	8.0	7.0	0	0
4414	그림틀, 사진틀	8.0	3.2	8.0	3.2	0	0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8.0	2.8~3.9	8.0	3.4	0	0
4416	목재통	8.0	2.2	8.0	2.2	0	0
4417	목재공구	8.0	2.2~2.8	8.0	2.5	0	0
4418	창문틀, 문틀	8.0	0~5.0	8.0	2.2	0	3
4419	목재식기	8.0	2.7~4.7	8.0	3.7	0	0
4420	목재장식품	8.0	0~10.0	8.0	4.2	0	1
4421	옷걸이, 이쭈시개	8.0	0~10.0	8.0	4.1	0	1
4501	코르크(가공)	8.0	0	8.0	0	0	2
4502	코르크(반제품)	8.0	0	8.0	0	0	1
4503	코르크(제품)	8.0	0	8.0	0	0	2
4504	응집코르크 제품	8.0	0	8.0	0	0	2
4602	대나무제품	8.0	3.3~7.9	8.0	5.6	0	0
4814	벽지	0.0	0	0	0	3	1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0.0	0	0	0		1
	평균			6.23	2.33	47 (20.6%)	89 (39.4%)

주: (할)은 할당관세, (조)는 조정관세임.

() 안은 %는 무관세 비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구조는 대체로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무관세 품목의 수는 HS 9 단위 기준 원목이 30개, 제재목이 26개였으며 뿔나무와 성형목재가 4개씩이었다. 그 밖에 단판과 창문틀 등은 3개씩이었으며 목탄과 목재의 봉, 궤도용 침목은 두 개씩 포함되어 있다. 목재 장식품과 옷걸이 및 이쑤시개는 각각 한 개씩만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공구와 사례 등에는 무관세 품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 전 품목의 세율은 6% 이상이며 파티클보드도 모두 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가공도가 높거나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는 무관세 대신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목재류 품목 분류와 관세구조를 비교할 때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무관세 품목 수가 적고 평균 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실행세율이 세 번별로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아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따라서 특정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일부 합판류(HS-4412)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정관세는 일종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경신해야 하므로 교역상대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본은 무관세 품목이 많고 평균세율이 낮으면서도 상이한 세 번을 가지는 품목에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복잡한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어 취약산업이나 민감 품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일 양국 간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일단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일 임산물 교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품목별 상대가격의 변화와 소득 수준별 소비자 기호 등에 따라 양국 간 임산물 교역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4. 한·일 임산물 경쟁력 비교 분석

4.1. 품목별 수입 시장 점유율

특정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력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장 점유율 추이와 국별 비교우위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 수출경합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별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계측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먼저 1999~2003년에 한국산 임산물이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밤이 평균 47.6%로 가장 높았으며 0.8g/cm³ 이상의 섬유판이 38.4%, 기타 섬유판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루판(10.5%)과 기타 산림수 종자(8.9%)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0.8g/cm³ 이하 섬유판(4.9%), 목

제케이스와 포장용기(4.2%), 초피(3.8%), 송이(3.1%), 그리고 펠렛과 박스펠렛 및 표고버섯(각 2.7%)의 순으로 점유율이 낮아졌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이었으며 열대산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0.01%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세는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산 대일 수출 주요 임산물 25개(HS 6 단위 기준) 가운데

표 7. 한국 임산물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단위: %							
HS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36	1.06	1.38	1.46	1.98	1.3
080240	밤	38.60	52.76	56.22	50.53	39.78	47.6
070959	송이				5.51	0.64	3.1
071239	표고				1.85	3.53	2.7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9.26	9.63	8.37	8.69	8.59	8.9
121190	초피	4.64	4.17	4.44	2.85	2.80	3.8
130190	올레오레진			0.18			0.2
140490	저피, 삼아피		0.50	0.08			0.6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3	0.27	0.21	0.16	0.18	0.2
440729	열대산 제재목			0.01			0.01
441111	섬유판(0.8g 이상)	57.62	58.29	30.98	28.14	17.12	38.4
441119	마루판	11.11	3.97	9.42	17.11	10.73	10.5
441121	섬유판(0.8g 이하)	5.54	4.65	4.28	4.90	4.90	4.9
441199	기타 섬유판	11.33	27.83	71.76	14.68	4.74	26.1
441213	열대산 합판			0.01	0.01	0.00	0.01
441219	침엽수 합판	0.08	0.11	1.68	1.05	2.33	1.1
441299	기타 적층 목재품	0.09	0.90	1.10	1.34	0.29	0.7
441400	그림틀, 사진틀	1.08	0.73	0.49	0.40	0.27	0.6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2.11	4.07	5.69	3.11	5.76	4.2
441520	팔레트, 박스 펠릿	2.81	2.78	2.09	2.84	3.09	2.7
441810	창문, 창문틀	0.37	0.32	0.80	0.22	0.44	0.4
441820	문틀, 문지방	1.00	1.00	1.10	1.06	0.63	1.0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0.08	0.05	0.08	0.05	0.03	0.1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18	0.21	0.25	0.14	0.10	0.2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2.18	1.34	0.65	0.72	0.65	1.1
442090	기타 칠기	2.23	2.00	1.16	1.87	1.57	1.8
442190	부채와 살	0.87	1.01	0.62	0.47	0.48	0.7
460210	기타 죽제품	0.69	0.48	0.26	0.18	0.11	0.4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1999년~2003년 기간 일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4개뿐인 반면 감소한 품목은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는 증감 폭이 작으면서 거의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 목재류에서는 침엽수 합판과 기타 적층 목제품,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등이었다.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송이, 초피, 저피와 삼아피 등이 있으며, 목재류 가운데는 0.8g/cm³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 그림틀 등, 건축용 목재건구, 목재 조상과 장식품, 기타 칠기, 부채와 그 살 및 기타 죽제품 등이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밤과 기타 산림수 종자, 침엽수제재목, 마루판, 0.8g/cm³ 이하 섬유판, 팔레트, 창문틀, 문틀과 문지방 등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품목보다 감소하는 품목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임산물 대일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밤의 점유율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산물은 수출금액도 적고 점유율 자체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재류도 주력 수출품인 0.8g/cm³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일본산 임산물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1999~2003년에 일본산 임산물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침엽수 합판으로 5년간 평균 수입 시장 점유율 33.4%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케이스와 포장상자는 32.2%, 기타 적층목제품은 19.3%로 역시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기타 산림수(14.7%)와 밤(10.4%), 페렛 및 박스페렛(6.7%), 건축용 목재건구(5.6%) 등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침엽수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1% 미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일본산 주요 수입 임산물 22개(HS-6 단위 기준) 가운데 1999년~2003년 기간 한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7개, 감소한 품목은 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는 증감 폭이 작거나 일정한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임산물 가운데 한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와 밤, 저피와 삼아피 세 품목이며 목재류는 기타 섬유판과 침엽수 합판, 창문 및 창문틀, 그리고 부채와 살 등 네 품목이었다. 특히 침엽수 합판은 2003년 한국의 침엽수 합판 수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은 하나도 없고 목재류 가운데 기타 적층목제품과 그림틀 등, 목재 케이스와 포장용기, 팔레트 및 박스 팔레

트, 그리고 건축용 목재건구와 젓가락 및 주방용품, 기타 칠기 등의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기타 산림수 종자와 올레오레진, 마루판과 목재조상 및 장식품 등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은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는 품목과 감소하는 품목의 수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침엽수 합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기타 적층목제품 등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일본 전체 임산물의 한국 수출 감소 추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산 임산물의 대한 수출경쟁력도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4.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특정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생산비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품목별 생산비 계측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생산비 계측 대신 시장에 현시된 정보, 즉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실현된 경쟁력을 계측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표 8. 일본 임산물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

HS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단위: %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27.27	4.73	4.76	14.85	26.09	14.7
080240	밤			3.13	20.07	8.05	10.4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0.33	3.30	0.42	0.21	0.28	0.9
130190	올레오레진	4.12	5.97	3.94	6.13	4.49	4.9
140490	저피, 삼아피	0.89	3.51	3.81	4.56	3.97	3.3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5	0.00	0.08	0.20	0.07	0.1
441119	마루판		1.35	0.09	0.15	0.69	0.4
441199	기타 섬유판	0.51		0.65	1.56	6.44	1.8
441213	열대산 합판	0.42	0.10	0.13	0.03	0.07	0.2
441219	침엽수 합판	49.18	17.45	16.92	30.99	52.31	33.4
441299	기타 적층 목제품	47.15	26.58	11.54	8.08	3.15	19.3
441400	그림틀, 사진틀	4.46	0.73	0.68	0.43	0.29	1.3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46.62	49.98	47.75	1.75	14.85	32.2
441520	팔레트, 박스 펠릿	21.31	9.11	2.30	0.60	0.13	6.7
441810	창문, 창문틀	0.03		1.04		1.26	0.8
441820	문틀, 문지방	1.25	0.37		0.39	0.02	0.5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7.69	16.17	0.25	3.47	0.40	5.6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3.85	2.60	4.03	1.79	1.75	2.8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1.33	0.96	3.49	1.44	2.98	2.0
442090	기타 칠기	2.82	1.42	0.95	1.17	0.85	1.5
442190	부채와 살	1.36	2.67	2.92	2.91	2.97	2.6
460210	기타 죽제품	0.22	0.16	0.29	0.24	0.22	0.2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있다.¹ 따라서 국별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측하면 시장에 나타난 경쟁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품목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경우 RCA 지수는 의미 있는 경쟁력 분석 지표로 이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특정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과 특정 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액을 계측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를 활용할 수 있다. MCA 지수는 세계 전체가 아닌 목표시장의 수입총액과 특정 품목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만 있으면 계측이 가능하므로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M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²

$$MCA_j^i = (X_j^i / TX_j^i) \div (X_j / TX_j)$$

여기서 X_j^i 는 수출국의 j국에 대한 I상품 수출액, TX_j^i 는 j국 시장에 대한 I 품목의 세계 수출총액, X_j 는 수출국의 j국 시장에 대한 수출총액, 그리고 TX_j 는 j국 시장에 대한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즉, 어떤 국가의 I품목에 대한 MCA 지수는 그 나라의 j국 시장 평균 점유율에 대

한 I품목의 수입 시장 점유율의 비율을 의미한다.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MCA 지수가 1 이상이면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1999년~2003년에 계측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계측 결과는 <표 9> 및 <표 10>과 같다. 분석 기간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평균 MCA 지수가 1보다 높은 단기소득 임산물은 밤(17.8), 송이버섯(1.3), 건조 표고(1.2), 산림수 종자(3.3), 수피류(1.9) 등이다.

목재류는 섬유관(13.8), 침엽수 합판(14.6), 침엽수 제재목(3.1), 마루판(4.1), 사례, 포장용기(1.6), 건축용 목재건구(3.8), 기타 죽제품(7.5) 등의 MCA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한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평균 점유율보다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아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타 산림수(0.5), 올레오레진(0.1)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열대산 제재목(0.04), 열대산 합판(0.1), 기타 적층 목제품(0.3), 그림틀(0.2), 문틀(0.4), 목재 장식품(0.4) 등 목재류는 MCA 지수가 1보다 작았다. 이들 품목은 일본으로 수출은 되고 있으나 수출액이 적고 시장점유율도 낮았다.

한편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있는 일본산 임산물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로진과 목재류의 조립식건축물, 기타 칠기 등 세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시장 MCA 평

¹ B. Balassa와 K. Kojima등은 수출성과에 따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RCA^i = (X^i / X) \div (WX^i / WX)$$

단, X^i 는 수출국의 I 품목 수출액, X 는 수출국 총수출액, WX^i 는 세계 전체의 I 품목 수출액, 그리고 WX 는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임.

² 김남두 외(1997) 47쪽.

표 9.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1	0.4	0.5	0.6	0.9	0.5
080240	밤	12.9	17.5	20.1	21.0	17.7	17.8
070959	송이	-	-	-	2.3	0.3	1.3
071239	표고(건조)	-	-	-	0.8	1.6	1.2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3.1	3.2	3.0	3.6	3.8	3.3
121190	초피	1.5	1.4	1.6	1.2	1.2	1.4
130190	올레오레진			0.1			0.1
140490	저피, 삼아피	2.6	2.3	2.1	1.6	1.0	1.9
440710	침엽수제재목	2.1	2.7	2.5	3.4	4.7	3.1
440729	열대산제재목			0.04			0.04
441111	섬유판(0.8g이상)	19.2	19.3	11.1	11.7	7.6	13.8
441119	마루판	3.7	1.3	3.4	7.1	4.8	4.1
441121	섬유판(0.5~0.8g)	1.8	1.5	1.5	2.0	2.2	1.8
441199	기타 섬유판	3.8	9.2	25.6	6.1	2.1	9.4
441213	열대산 합판	0	0	0.3	0.1	0.1	0.1
441219	침엽수 합판	6.0	1.1	0.1	12.5	23.9	14.6
441299	기타 적층 목제품	0.0	0.3	0.4	0.6	0.1	0.3
441400	그림틀, 사진틀	0.4	0.2	0.2	0.2	0.1	0.2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0.7	103	2.0	1.3	2.6	1.6
441520	팔레트, 박스 펠릿	0.9	0.9	0.7	1.2	1.4	1.0
441810	창문, 창문틀	0.1	0.1	0.3	0.1	0.2	0.2
441820	문틀, 문지방	0.3	0.3	0.4	0.4	0.3	0.4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8.7	3.0	3.2	0.3	-	3.8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2	0.2	0.3	0.2	0.1	0.2
442010	목제조상, 장식품	0.7	0.4	0.2	0.3	0.3	0.4
442090	기타 칠기	1.4	0.7	0.8	0.8	2.0	1.4
442190	부채와 살	0.3	0.3	0.2	0.2	0.2	0.3
460210	기타 죽제품	7.4	7.8	7.3	7.9	7.0	7.5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균 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의 철쭉 속 식물(33.1)과 기타 분재용 나무(22.3), 사고뿌리(25.7), 생칠(20.9), 마롱글라세(26.6) 등은 MCA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목재류 가운데서도 흑단 원목(31.1), 단판(26.0) 등의 한국시장 MCA 지수가 높았다.

일본이나 한국의 상호 임산물 수출액이 대체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농림산물 전체의 대일 및 대한 수출액과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전체 농림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와 2.1%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대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가운데 특정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상대국 시장 비교우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 확대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MCA 크기를 비교하기보다 지난 5년간 MCA 변화 추이를

표 10.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30	철쭉속 식물	32.2	8.5	29.1	33.1	2.3	33.1
060290	기타 분재용 나무	8.7	12.5	5.3	33.1	11.5	22.3
080240	밤(탈각/미탈각)	-	-	0.9	29.5	3.8	15.9
110620	사고뿌리(취뿌리)	-	15.0	29.1	33.1	-	25.7
130190	올레오레진/검류	8.7	25.0	0.4	2.2	1.6	7.6
130219	생칠	16.1	17.4	26.0	18.4	26.8	20.9
140410	식물성 염색원료	8.7	1.8	6.9	1.3	4.6	4.6
140490	수피류	5.1	2.9	5.6	14.5	-	7.0
200600	마롱글라세	32.3	25.0	26.5	22.9	-	26.6
200819	밤(조제저장처리)	0.7	1.7	0.4	15.7	2.4	4.2
380610	로진	0.6	0.3	0.2	0.2	0.3	0.3
440121	침상(활엽수)	-	4.3	7.4	19.2	3.6	8.6
440320	원목(방부처리침엽수)	2.7	1.9	0.9	2.7	0.6	1.8
440399	흑단(원목)	-	-	29.1	33.1	-	31.1
440799	흑단(제재목)	18.9	7.8	7.5	-	-	11.4
440839	단판	-	-	-	17.8	34.2	26.0
441129	기타 섬유판	2.9	0.8	1.8	0.8	3.2	1.9
441219	침엽수 합판	16.7	4.5	5.1	1.8	2.8	6.2
441229	마루판	4.5	4.9	2.4	2.5	0.5	2.9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14.9	12.5	13.9	0.6	5.8	9.5
441520	팔레트, 박스 팰릿	6.8	2.3	0.7	0.2	0.4	2.1
441600	목재의 통 등	3.2	0.9	0.3	3.4	0.7	1.7
441900	대나무젓가락	7.0	3.7	2.1	1.4	0.9	3.0
442090	기타 칠기	1.7	0.8	0.5	0.6	1.6	1.0
442190	보빈, 스폴, 콕	3.5	2.4	1.3	0.5	3.4	2.2
450490	응집코르크	0.1	0.4	3.6	2.3	0.2	1.3
481430	기타벽지	1.3	2.5	3.8	7.8	3.9	3.9
940600	조립식 건축물(목재)	0.1	0.1	-	0.3	0.3	0.3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산 임산물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산림 수 종자와 침엽수 제재목, 섬유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및 팔레트와 박스 팔레트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 시장으로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다.

일본산 임산물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분재용 나무와 사고뿌리, 생칠과 수피류, 기타 벽지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침상 활엽수, 흑

단 원목, 단판 등 목재류가 있다. 이들 품목은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일 임산물 교역구조는 밤과 송이,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출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

고 특정 품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한 외국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 분류의 세분화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세분된 품목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한 관세 구조인 반면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하여 대부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효과적으로 민감 품목을 보호할 수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평균 실행세율은 한국이 18.7%로 일본의 6.2%에 비해 3배나 되는 수준이며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도 한국이 6.23%로 일본의 2.33%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관세 비율은 한국이 2.8%, 일본이 28.8%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목재류 무관세 비율도 한국이 20.6%로 일본의 39.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한국의 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임산물 관세 체계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HS-4 단위로 분류한 단기소득 임산물에 한국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는 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품목류는 모두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농산물의 중심세율인 8%를 적용하는 품

목이 7개나 되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개는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세율 8%를 부과하는 품목도 17개나 되어 더욱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복잡한 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HS-4 단위 기준 특용 임산물(단기소득 임산물)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는 12개나 되며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은 16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무관세 품목 7개를 제외하고 품목에 따라 2.5%에서 15%까지 7가지 세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가 14개로 한국의 7배나 되며 단일세율 품목 16개에는 무관세 품목 11개 외에 2.2%에서 7%까지 5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버섯 등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제품, 기타 산림수, 밤과 팔레트 및 박스 팔레트, 건축용 목재건구 등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이, 표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

판, 침엽수 합판, 침엽수 제재목, 목재케이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분재용 나무, 사고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성염색원료, 마롱글라세, 삭편상 활엽수, 방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편,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버섯 등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등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로 나타났다. 양국은 이들 품목을 상호 수출하면서 수입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교역구조는 상호 경쟁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면이 강하며 임업 부문 내에서의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FTA 체결 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부분 품목의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일 임산물 수출이 특정 품목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김군호. 2003. “FTA 협상 국제동향.” 『국제농업소식』. pp. 152-168. 농림부.
 신동천 등. 2001.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 개발』. 정책연구보고 P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등. 2000. 『임업 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 방안 연구』. C2000-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인교. 2004.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일 FTA와 한국 농업』. 세미나자료집. pp. 5-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3.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 『나라경제』 157: 18-22.
 최세균. 2004. “한·일 FTA의 농업 부문 파급 영향과 과제.” 『한·일 FTA와 한국 농업』. 세미나자료집. pp. 43-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등.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C200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고 접수일 : 2005년 1월 17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2월 7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4월 4일